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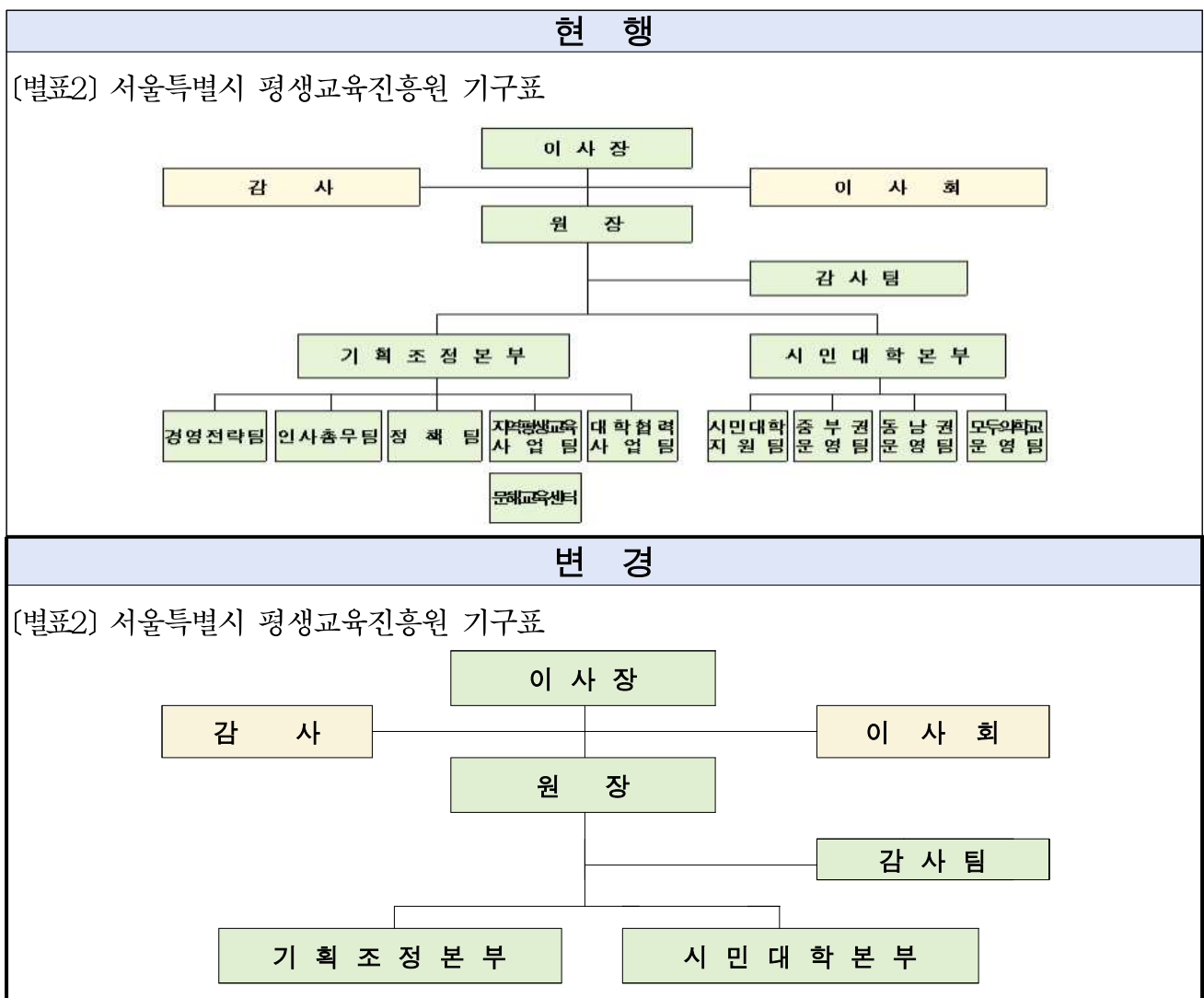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안 보고

1. 개정사유

- 정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수 출연기관이 활용하는 ‘본부/실’ 단위 기구표 표기방식 적용을 위한 <별표2> 기구표 변경
-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사업이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운영인력 반영을 위한 <별표3> 정원 변경

2. 주요내용

- [별표2] 기구표 변경
 - ‘본부/실’ 단위 기구표 표기 적용



○ [별표3] 정원표 변경

- 정원 10명 증원 (2급 2명, 3급 3명, 4급 5명)

현 행						
[별표3]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정원표						
계	원 장	1급	2급	3급	4급	기능직
77	1	2	10	19	27	18

개정(안)						
[별표3]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정원표						
계	원 장	1급	2급	3급	4급	기능직
87	1	2	12	22	32	18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2항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제37조(정관의 변경)
-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사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업 전환 추진계획 안내(평생교육과-7412, 2024.7.1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를 민간위탁 기간 만료('24년 12월) 후 불임과 같이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 추진절차 및 일정

서울특별시 사전협의	→	조직개편(안) 원장방침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이사회 개최 및 의결	→	서울특별시장 승인 및 허가
'24.8.		'24.8.		'24.9.		'24.9.		'24.9.

4. 첨부

- 불임자료
 1.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개정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1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별표2> 개정사항

현행
[별표 2] (신설2022.2.28.)(개정2024.2.29.) 기구표 이사장 감사 이사회 원장 감사팀 기획조정본부 시민대학본부 경영전략팀 인사총무팀 정책팀 지역평생교육사업팀 대학협력사업팀 시민대학지원팀 중부권운영팀 동남권운영팀 모두의학교운영팀 문해교육센터
개정안
[별표 2] (신설2022.2.28.)(개정2024.2.29.)(개정2024.9.00.) 기구표 이사장 감사 이사회 원장 감사팀 기획조정본부 시민대학본부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별표3> 개정사항

현 행						
[별표 3] (신설 2022.2.28.)						
정원표						
계	원 장	1급	2급	3급	4급	기능직
77	1	2	10	19	27	18

개 정 안						
[별표 3] (신설 2022.2.28.)(개정2024.9.00.)(시행2025.1.1.)						
정원표						
계	원 장	1급	2급	3급	4급	기능직
87	1	2	12	22	32	18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제정	2014. 10. 30.
개정	2015. 9. 7.
개정	2016. 2. 22.
개정	2016. 6. 24.
개정	2016. 12. 27.
개정	2017. 9. 19.
개정	2018. 2. 28.
개정	2019. 2. 26.
개정	2020. 5. 22.
개정	2022. 2. 28.
개정	2024. 2. 29.
개정	2024. 9. 0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8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 2.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 3.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 4.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 5.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 6. 학습동아리 육성·활동지원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8.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원
9. 기타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확산을 위한 사업
10.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진흥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진흥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수행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임 원

제6조(임원의 구성) ① 진흥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진흥원장 1인(이하 “원장”이라 한다)
3. 이사 13인 이내(이사장 및 원장 포함)
4. 감사 2인

② 상근 임원은 원장에 한하며, 상근 임원은 시장의 승인이 없는 한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임명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2016.6.24)(개정2017.9.19)

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장
2.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3.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 ⑤ 감사는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하며, 직무감사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회계감사는 선임직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2016.6.24)(개정2017.9.19)
- ⑥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원장과의 계약) ① 진흥원은 원장이 임명된 경우 이사회가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는 계약안에 따라 원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이 진흥원을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안에는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와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19.2.26)

-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완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 ③ 선임직 이사 또는 감사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선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당연직 이사 중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19.2.26)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원의 업무 및 사업에 관련하여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출한 자로 하되, 1인은 시의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진흥원의 재산상황의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와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소집을 요구
5.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019. 2. 26)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8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제12조3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시장은 진흥원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및 정관을 위반한 때
2.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진흥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때

제13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 내지 제6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또는 이 정관에 위반하여 진흥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5.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임원간의 분쟁을 야기하여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곤란하게 한 때
 6.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② 임원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 사 회

제15조(구성) ① 진흥원의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개정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재산의 관리, 취득,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9. 진흥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10.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1.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신규 2016.12.27)

12.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의 재원확보 및 기타 필요한 활동을 위하여 이사회에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7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여야 한다.^(개정2016.2.22)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소집한다.

1. 시장이 요청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원장 또는 감사 1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는 민법 제62조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 및 제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 관해서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2018.2.28)

제19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 부의할 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8조에 의한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2016.2.28)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해임 요청 등에 있어서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본인과 진흥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3. 기타 이사회 안건이 본인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어 본인이 요청하거나 임원으로부터 기피신청이 제기되어 이사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제21조(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직제 및 직원

제22조(직제 및 정원) 진흥원의 기구는 <별표 2>,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흥원에 필요한 기구, 정원 및 사무분장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진흥원의 직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② 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약 또는 임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과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자문위원회 등) ①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 내에 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의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자문위원회 등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고문변호사) ① 원장은 정당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①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하며,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에 받은 출연금 중 기본재산
2.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제27조(재산의 관리) ① 원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진흥원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진흥원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임대, 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동 재산에 대하여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운영재원) 진흥원의 관리·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운영재원 등의 경비와 사업비는 시의 출연금, 기본재산의 과실, 지원금, 기부금,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29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7)(개정 2016.2.22)

-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가 시의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경우,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회계감사 등) ① 진흥원은 매 사업 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결산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재산의 평가) 진흥원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에 의한다.

제33조(결산서의 제출)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사업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 보고서
2.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3.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4. 공인회계사의 예산·결산 보고서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5. 진흥원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6.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34조(결산 잉여금의 처리) 매 사업연도의 자체수입 초과달성, 경상비용 절감 등 경영개선 등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필요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진흥원의 재산은 진흥원 설립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회계규정) 진흥원의 재산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7조(정관의 변경)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규정의 제정)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직제 및 정원, 회계, 인사, 보수 등 중요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9조(저작권의 귀속) 진흥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진흥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원저작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40조(해산) ①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진흥원이 해산된 때에는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③ 시장은 귀속된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 등에 증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41조(공고) 진흥원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과 법령 및 정관, 내규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42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인 설립의 준비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의 시행 전이라도 이 정관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조(회계년도) 진흥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등) 진흥원의 설립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설립 후 2월 이내에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조례 또는 직제 개·폐 등에 의한 적용) 제7조의 당연직 이사는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직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의 시행 전에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이사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진흥원의 최초 선임직 이사·감사는 제7조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른 관련절차 등을 거쳐 선정된 자에 대해 시장이 선임한다.

③ 이 정관에 의한 법인 설립 당초 임원의 임기는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작한다.

④ 법인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시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집행은 시 회계절차 등을 준용하여 시 공무원이 수행한다.

⑤ 원장 취임 후에는 제4항의 집행을 원장이 한다. 원장 취임 이전에 기 계약된 사항에 대한 지출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인 설립의 준비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의 시행 전이라도 이 정관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15.9.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2.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6.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2.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2.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5.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9. 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3>은 2025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별표 1> (신설2020.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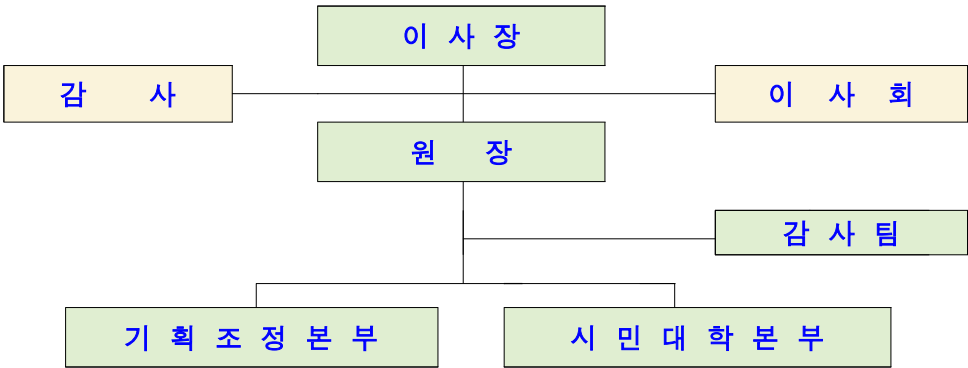
기본재산 목록

(단위 : 원)

구 분	출 연 자	금 액	비 고
계		150,197,797	
현 금	서울특별시	100,000,000	설립출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50,197,797	잉 여 금

<별표 2> (신설2022.2.28.)(개정2024.2.29.)(개정2024.9.00.)

기구표



<별표 3> (신설2022.2. 28)(개정2024.9.00.)(시행2025.1.1.)

정원표

계	원 장	1급	2급	3급	4급	기능직
87	1	2	12	22	32	18